

교역자은급기여금 납부기한 유예 안내

신은급법 기간 중 2007년, 2010년, 2013년분 중 1회분 납부
2025년 4월 30일까지 납부기한 유예

※ 교역자은급재단 제140회 임시이사회에서 결의

- ☑ **1958년 7월 이후 출생 교역자만** 해당하는 사항입니다.
- ☑ 교역자은급기여금 중 **2007년, 2010년, 2013년분에** 해당하는 사항입니다. ※ 준회원 허입연도에 따라 2010년, 2013년 혹은 2013년만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(1회분은 꼭 납부)
- ☑ **2025.04.30.까지 1회분이라도 납부해야 합니다. 납부하지 않을 경우, 현재 은급제도가 아닌 신은급제도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납 1회마다 10% 차감되며, 최대30% 차감이 결정됩니다.**

교역자은급재단 시행규정 세칙

제3조(기금조성)

② 교역자은급기여금

2. 납부기간

3) 1958년 7월 이후 출생한 교역자는 교역자은급기여금 2007년, 2010년, 2013년도분에 대하여는 개정된 은급법의 규정에 따른다. 3년내(2024년말까지) 1회라도 납입시 현 은급제도로 환원하는 것으로 하고, 1회도 납입하지 않을 경우는 신은급제도로 적용한다.

- ☑ **나의 교역자은급기여금 확인하기**
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1:1 상담 및 홈페이지 접속하여
개인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은급재단 +



(재)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

- 전 화 02)399-4326~9
- 이메일 kmcpension@nate.com